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8일, 서미화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9.22.)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9.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미화의원)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 7천여 건 이상에 달함.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피진정병원에 공문으로 요구하여 받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 조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위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0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¹⁾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환자의 진료 관련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당사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당사자에는 진정한 및 피해자 외에도 피진정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사업무와 무관한 피진정인의 진료기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서 “당사자”란 진정한·피해자·피진정인을 약칭한 것임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환자의 진료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진정인 및 진정인의 진료기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경미한 자구정리가 있었음

10.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환자의 진료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자 하는 현행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진정인 및 진정인의 진료기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20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제3항제20호 중 “당사자”를 “피해자”로 하고, “기록”을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④ · ⑤ (생 략)	<u>회법」 제36조에</u> <u>따라 국가인권위</u> <u>원회가 조사와</u> <u>관련하여 당사자</u> <u>를 진료한 의료</u> <u>기관에 기록의</u> <u>열람 또는 사본</u> <u>교부를 요구하는</u> <u>경우</u> ④ · ⑤ (현행과 같 음)	<u>회법」 제36조에</u> <u>따라 국가인권위</u> <u>원회가 조사와</u> <u>관련하여 피해자</u> <u>를 진료한 의료</u> <u>기관에 해당 진</u> <u>료에 관한 기록</u> <u>의 열람 또는 사</u> <u>본 교부를 요구</u> <u>하는 경우</u> ④ · ⑤ (현행과 같 음)
--------------------	--	--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생략)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 ----- ----- ----- ----- ----- ----- ----- -----.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u><신 설></u>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